



발신번호 5개이상 등록 신청서

※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아래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
문의 070-7682-0114 / FAX 061-681-3430 / E-mail : na@123tel.co.kr

▶ 신청고객 정보 (기업 및 기관 고객만 신청 가능)

회사명		대표자명	
회사주소		사업자등록번호	
담당자명		유선번호	
이메일 주소		휴대폰번호	

▶ 신청내용

사이트명	
아이디(ID)	
발신번호 5개이상 등록 신청 동의	<p>가. 회사의 의무</p> <p>1. 회사는 스피어메세지·문자포싱메세지 발신번호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세지에 대해서 차단할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나. 이용자의 의무</p> <p>1. 이용자는 스피어메세지·문자포싱메세지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.</p> <p>2.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 명이나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단, 회사는 전단의 서비스 차단 후 지체 없이 당해 차단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</p> <p>3. 부 조 제 5 항의 경우, 회사는 차단 된 문자 서비스에 관한 자료 (변화된 발신번호, 차단시간, 전송자명 등)를 1년간 보관 관리하고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</p> <p>다.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</p> <p>1.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</p> <p>①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번호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</p> <p>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발신번호 변작 등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</p> <p>라. 계약해지</p> <p>1. 방송통신위원회·한국인터넷진흥원·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기관이 스피어메세지·문자포싱메세지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</p> <p>2. 이용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</p> <p>위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동의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
전기통신사업법 제84 조의 2 및 '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'에 의해서 위와 같이 발신번호 5개 이상 등록이 가능하도록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사업자명

(서명 또는 직인)